

『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에는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,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1장 총칙(안 제1조부터 제9조)

이 조례에서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, 지방세 부과·징수 사무의 위임, 기한의 연장,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

- 제2장 부과징수(안 제10조부터 제24조)

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, 허가 등의 제한, 시세환급금의 총당과 통지,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,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등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

- 제3장 체납처분(안 제25조부터 제45조)

압류 및 압류의 해제, 처분,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

○ 제4장 보칙(안 제46조부터 제50조)

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

4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

○ 경상북도 세정과-14559('10.9.29)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도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,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, 허가 등의 제한, 시세환급금의 총당과 통지,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,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등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과
- 압류 및 압류의 해제, 처분,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